

(2024학년도 제1차)

규 정 심 의 위 원 회

○ 일시: 2024. 3. 21.(목), 16:10 ~ 18:00

○ 장소: 문화관 소통룸(402호)

○ 심의 안건

연번	안건	입안부서
1	교양대학운영규정	교양교육지원센터
2	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개선에 관한 규정	교양교육지원센터
3	시험 및 성적에 관한 규정	학사관리팀
4	교직원보수규정	기획예산팀

○ 추후 일정

기구명	일시
교무위원회	- 2024.02.13.(화)., 14:00
법인이사회	- 3월 중(교직원보수규정 해당)



우석대학교
WOOSUK UNIVERSITY

기획예산팀

규 정 입 안 서				
규정명	「교양대학운영규정」			
입안형태	☐ 제 정 ☒ 개 정 ☐ 폐 지			
소관부서	교양교육지원센터	관련부서	해당사항 없음	
부서간 협의 결과	• 해당사항 없음			
대학평의위원회	• 해당사항 없음			
입안사유 (추진배경)	• 교양대학운영위원회폐지 - 위원회 기능 중첩에 따른 비효율적 업무 구조 개선 - 2020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신설로 교양대학운영위원회 기능이 교양교육과정위원회와 교양교육지원센터 일반 업무 기능에 중첩 - 교양대학운영위원회의 활동 부진에 따라 해당 위원회 회의에서 폐지 논의 및 동의함 • 교양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변경 - 위원회 구성 대상 및 인원 수 조정 필요 - 구성 대상에 학생위원, 외부 위원 포함 긴급회의 필요시 성원 충족 어려움 - 동일한 이유로 15명 내외 구성 인원 수 축소 필요 - 위원회 당연직 명시되어 있지 않음			
관련근거 (관계법령)	• 「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의2(위원회의 폐지) - ②위원회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활동이 부진한 경우 총장이 이를 폐지할 수 있다.			
주요내용 (제개정내용)	• 교양대학 운영 관련 업무 구조 재정립 - 교양대학운영규정 <제3장 교양대학운영위원회> 삭제 • 교양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변경 - 위원 구성 인원 15명에서 12명으로 변경 - 위원 구성 대상에서 학생 위원, 외부 위원 제외 - 위원회 당연직 명시			
기대효과	• 교양대학 운영 효율성 제고			
구성원 참여·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(공청회, 설명회, 의견조회 등)	가. 의견수렴 유무 나. 공청회 및 공고기간(포털 및 홈페이지) 다. 의견제출 유무 라. 의견수렴 반영사항	해당사항 없음		
첨부자료	「교양대학운영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			

「업무분장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<u>제 3 장 교양대학운영위원회</u> 제8조(교양대학운영위원회) ①교양대학 운영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대학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장, 교양교육지원센터장, 교양교육연구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. (개정 2019.4.11.) ③위원은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(개정 2019.4.11.)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교양교육지원센터 직원이 한다. (개정 2019.4.11.) [본조 개정 2020.10.8.] 제9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20.10.8.) 1. 교양교육의 방향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. 교양대학 조직 및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(개정 2019.4.11., 2020.10.8.) 3. 교양대학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(개정 2019.4.11., 2020.10.8.) 4. 교양대학 업무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(개정 2020.10.8.) 5. 교양대학 교류에 관한 사항 (신설 2020.10.8.) 6. 교양대학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(신설 2020.10.8.) 7. 기타 교양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(개정 2020.10.8.) 제10조(회의)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[본조 신설 2019.4.11.] 제11조(기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’을 준용하고,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(개정 2019.4.11.)	<u>제3장 교양대학운영위원회</u> <u><삭제 2024.00.00.></u>

현행	개정
제 4 장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제12조(교양교육과정위원회) ① 교양교육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위원회(이하 “교육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<u>위원장은 학장으로 하며, 위원은 교양교육지원센터장, 교양교육연구소장, 학사관리팀장, 교양교육부장, 학생위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한다.</u> ③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교양교육지원센터 직원이 한다. 제13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14조(교육위원회의 기능)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. 교양교육과정 평가, 개선 및 개편에 관한 사항 3. 교양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정합성에 관한 사항 4. 교양교육과정 관련 각종 제도(교양학사제, 교과목 인증제, 지역인재인증제 등)의 운영 및 도입에 관한 사항 5. 기타 교양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(신설)	제 4 장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제12조(교양교육과정위원회) ① 교양교육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<u>위원장은 학장이 되며,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외로 구성하며, 교양교육지원센터장, 교양교육연구소장, 학사관리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u>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교양교육지원센터 직원이 한다. 제13조(회의) (현행과 같음) 제1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. 교양교육과정 평가, 개선 및 개편에 관한 사항 3. 교양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정합성에 관한 사항 4. 교양교육과정 관련 각종 제도(교양학사트랙, 교과목인증제, 지역인재인증제 등)의 운영 및 도입에 관한 사항 5. 기타 교양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부 칙 <u>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</u>

규 정 입 안 서

규정명	「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개선에 관한 규정」			
입안형태	☐ 제 정		☒ 개 정	☐ 폐 지
소관부서	교양대학	관련부서	학사관리팀	
부서간 협의 결과	• 협의 완료 및 특이사항 없음			
대학평의회	• 해당사항 없음			
입안사유 (추진배경)	• 2024 교양교육과정 정기 개편에 따른 교양 교육과정 편성 대영역 명칭 변경			
관련근거 (관계법령)	• 2024 교양교육과정 편성표			
주요내용 (제·개정내용)	• 제4조 교양 교육과정 편성 대영역 명칭 변경 기초교육, 교양교육, 소양교육 → 기초교양, 균형교양, 소양교양으로 변경			
기대효과	• 교양교육과정에서 영역별 균형 이수에 대한 학생 인식 제고			
구성원 참여·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(공청회, 설명회, 의견조회 등)	가. 의견수렴 유무		해당사항 없음	
	나. 공청회 및 공고기간(포털 및 홈페이지)			
	다. 의견제출 유무			
	라. 의견수렴 반영사항			
첨부자료	1. 「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개선에 관한 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2. 「교양교육과정 편성표」 1부.			

「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개선에 관한 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2장 교육과정 편성	제2장 교육과정 편성
제4조(교양 교육과정) ①교양 교육과정은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, 인재상 구현을 위한 교육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, 필요에 따라 비교과 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. (개정 2020.10.8.) 1. 기초교육: 사고, 언어, 기초과학, 정보문해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(개정 2020.10.8.) 2. 교양교육: 인간, 사회, 자연에 대한 학문적 탐구 성과를 두루 습득하여 얻어진 기본지식을 조망하고 연계시켜 종합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주는 교육 (개정 2020.10.8.) 3. 소양교육: 신체적, 정서적, 사회적, 진로지도 등 체험 위주의 교육 (개정 2020.10.8.)	제4조(교양 교육과정) ①교양 교육과정은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, 인재상 구현을 위한 교육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, 필요에 따라 비교과 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. (개정 2020.10.8.) 1. 기초교양: 사고, 언어, 기초과학, 정보문해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(개정 2020.10.8.) 2. 균형교양: 인간, 사회, 자연에 대한 학문적 탐구 성과를 두루 습득하여 얻어진 기본지식을 조망하고 연계시켜 종합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주는 교육 (개정 2020.10.8.) 3. 소양교양: 신체적, 정서적, 사회적, 진로지도 등 체험 위주의 교육 (개정 2020.10.8.)
<u>(신설)</u>	<u>부 칙</u> <u>이 규정은 2024년 월일부터 시행한다.</u>

규 정 입 안 서			
규정명	「시험 및 성적에 관한 규정」		
입안형태	☐ 제 정 ☒ 개 정 ☐ 폐 지		
소관부서	학사관리팀	관련부서	해당사항 없음
부서간 협의 결과	• 해당사항 없음		
대학평의회	• 해당사항 없음		
입안사유 (추진배경)	• 중간고사 종료 후 학생 개인 성적 확인이 불가하여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업 동기를 상승시키고자 함		
관련근거 (관계법령)	• 해당사항 없음		
주요내용 (제·개정내용)	• 중간고사 성적열람이 필요한 학과(부)는 중간고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적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함		
기대효과	• 중간성적 현황확인에 따른 학생 개인 경쟁력 강화 및 학업 동기 상승 • 체계적인 성적 산출 과정 수립, 성적 이의 제기 건수 감소 등		
구성원 참여·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(공청회, 설명회, 의견조회 등)	가. 의견수렴 유무 나. 공청회 및 공고기간(포털 및 홈페이지) 다. 의견제출 유무 라. 의견수렴 반영사항	해당사항 없음	
첨부자료	「시험 및 성적에 관한 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		

「시험 및 성적에 관한 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7조(채점표 제출 및 성적열람 등) ①교과목 담당 교수는 매 학기말 시험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적을 전산에 입력하고, 교과목별로 채점표를 작성하여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 ②출석부 등 성적평가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1. 전공교과목 : 개설학과(부) 2. 교양교과목 : 교양교육지원센터 3. 교직교과목 : 교직부 4. 취·창업관련 교과목 : 해당 행정부서 ③학사관리팀은 제출된 성적을 수강한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제7조(채점표 제출 및 성적열람 등) ①교과목 담당 교수는 매 학기말 시험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적을 전산에 입력하고, 교과목별로 채점표를 작성하여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<u>단, 중간고사 성적열람이 필요한 해당 학과(부)는 시험종료 후 중간고사 성적을 10일 이내에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.</u> ②~③ (현행과 같음)
<u>(신설)</u>	<u>부 칙</u> <u>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</u>

규 정 입 안 서

규정명	「교직원보수규정」			
입안형태	☐ 제 정		☒ 개 정	☐ 폐 지
소관부서	기획예산팀	관련부서	해당사항 없음	
부서간 협의 결과	• 해당사항 없음			
대학평의회	• 해당사항 없음			
입안사유 (추진배경)	• 대·내외 업무 활동을 위한 수당지급 근거 마련			
관련근거 (관계법령)	• 해당사항 없음			
주요내용 (제·개정내용)	• 제21조(기타수당) 제1항 호신설 - 10. 특별수당 : 대·내외 업무 수행을 위한 수당 • 제22조(보수지급일) 문구 신설 - 특별수당은 매월 5일 지급			
기대효과	• 대·내외 업무 활동을 통한 학교의 이미지 제고 및 역량 강화			
구성원 참여·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(공청회, 설명회, 의견조회 등)	가. 의견수렴 유무		해당사항 없음	
	나. 공청회 및 공고기간(포털 및 홈페이지)			
	다. 의견제출 유무			
	라. 의견수렴 반영사항			
첨부자료	「교직원보수규정」 개정(안) 산·구조문대비표 1부.			

「교직원보수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 3 장 수 당	제 3 장 수 당
제21조(기타수당) ①수행업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1. 행사수당 : 교내외 각종행사를 수행한 <u>자</u> 2. 특별강의수당 : 특별강의·강연 등을 수행한 자 3. 심사평가수당 : 각종시험출제, 감독, 대학평가, 정부재정지원사업, 특성화사업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<u>자</u> 4. 입학수당 : 입시업무를 수행한 <u>자</u> 5. 진료수당 : 의료관련 면허소지자로서 진료관련 업무를 수행한 <u>자</u> 6. 재정기여수당 : 재정(예산절감, 발전기금, 순수외국인 입학, 편입학, 재입학 등) 확충에 기여한 <u>자</u> 7. 위원회수당 :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행정지원 담당업무를 수행한 <u>자</u> 8. 재해공로수당 : 재난대비 비상 대응,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한 <u>자</u> 9. 감사수당 :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<u>자</u> (호 신설) ②<삭제 2020.6.10.> ③<삭제 2014.1.1.> ④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전수당을 별표 13과 같이 지급한다. ⑤예산의 범위내에서 학생지도수당을 별표 14와 같이 지급한다. 단, 자율연수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⑥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⑦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급되는 수당은 해당 사업규정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, 지침이 없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 ⑧기타수당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제21조(기타수당) ①수행업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1. 행사수당 : 교내외 각종행사를 수행한 <u>교직원</u> 2. 특별강의수당 : 특별강의·강연 등을 수행한 <u>교직원</u> 3. 심사평가수당 : 각종시험출제, 감독, 대학평가, 정부재정지원사업, 특성화사업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<u>교직원</u> 4. 입학수당 : 입시업무를 수행한 <u>교직원</u> 5. 진료수당 : 의료관련 면허소지자로서 진료관련 업무를 수행한 <u>교직원</u> 6. 재정기여수당 : 재정(예산절감, 발전기금, 순수외국인 입학, 편입학, 재입학 등) 확충에 기여한 <u>교직원</u> 7. 위원회수당 :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행정지원 담당업무를 수행한 <u>교직원</u> 8. 재해공로수당 : 재난대비 비상 대응,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한 <u>교직원</u> 9. 감사수당 :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<u>교직원</u> 10. 특별수당 : 대·내외 업무를 수행한 <u>교직원</u> ②~⑧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
제 4 장 보수지급 제22조(보수지급일) 교직원의 보수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되, <u>그 지급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직전 금요일에,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</u>	제 4 장 보수지급 제22조(보수지급일) ①교직원의 보수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되, <u>특별수당은 매월 5일로 한다.</u> ②<u>그 지급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직전 금요일에,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</u>
(신설)	부칙(학교법인 우석학원- (2024.00.00.)호)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조치) 제21조제1항제10호, 제22조제1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.